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영어 지필고사 재시험 실시 건

관계기관 한수중학교

내 용

「한수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9조 [지필평가 운영]에 따르면 지필평가 시행 시 학교는 감독교사를 시험실 당 1~2명 배치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시험 시작 전 시험지 배분 과정에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시험지 인쇄상태 등을 안내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한수중학교 감독교사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감독은 정감독 1명과 부감독 1명으로 편성하며 정감독은 교실 정면 중앙에 부감독은 교실 뒤편에 위치하여 시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필고사 시행 학생 유의사항에는 ‘문제지를 받으면 반드시 학년-과목명-페이지수, 총 면수를 확인합니다.(시험지를 다 받지 못하여 누락된 경우, 다른 과정의 문항지를 푼 경우는 본인 책임이 큼을 반드시 인식하고 확인 철저)’ 라고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한수중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2차 2학년 지필고사를 실시하면서,

① 정감독 1인(교사 ○○○)만 교실에 배치하였고 부감독은 복도에서 감독하게 하여, 2022. 7. 7. 3교시 2학년 4반에서 다른 학년 문제지를 푼 학생이 발생한 사안(소명서 2022. 10. 12.(수) 작성)에 대해 감독 교사가 시험실 안에서 교사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였다.

②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 사안 발생 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때는 공정성, 합목적성, 상식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또한 특정안을 선택함에 따른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 평가문항의 변별도와 타당도, 학생의 유불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시험과목의 재시험 실시 협의 과정(2022 제6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에서 기 안내된 학생 유의사항에 있는 학생 본인의 책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감독교사가 매뉴얼대로 시험장에서 진행하였는지, 재시험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유불리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 ① 한수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한수중학교

내 용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방과후, 주말, 방학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강사수당 지급 시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석부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중학교 교사 6명은 금번 학교 종합감사 대상기간 중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표]와 같이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작성한 출석부상 날짜에 출장, 조퇴 등의 사유로 해당일에 실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복무를 상신하였으나, 실제 근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과 협의하여 날짜를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를 위한 변경계획서나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021~2022학년도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수당 부적정 내역

순	교사	과목	출석부 상 수업일/수업시수	당일 복무사항	부적정 수령 금액 (단위: 원)	비고
1	○○○	피아노레슨& 음악이론	2021. 11. 8.(월) (2시간)	조퇴 14:20~16:40	80,000	
2	○○○	1인 1악기	2021. 11. 4.(금) (2시간)	공가 15:00~16:40	80,000	
			2021. 11. 15.(월) (2시간)	출장 15:00~16:40	80,000	
			2021. 12. 1.(수) (2시간)	공가 14:00~16:40	80,000	
			2021. 12. 22.(수) (2시간)	병조퇴 14:40~16:40	80,000	

순	교사	과목	출석부 상 수업일/수업시수	당일 복무사항	부적정 수령 금액 (단위: 원)	비고
3	○○○	글쓰기반C	2021. 12. 10.(금) (1시간)	조퇴 15:10~16:40	40,000	
4	○○○	중드로 배우는 중국어반	2021. 12. 24.(금) (1시간)	조퇴 13:00~16:40	40,000	
5	○○○	사회기초반	2021. 11. 19.(금) (1시간)	조퇴 14:40~16:40	40,000	
			2021. 12. 29.(수) (1시간)	조퇴 14:40~16:40	40,000	
6	○○○	기초체력향상반	2022. 4. 25.(화) (2시간)	조퇴 15:00~16:40	80,000	
합 계					640,000	

【조치할 사항】

- ① 한수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며, 과오지급된 640,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한수중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수중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 등 기타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동일 근로자의 이전 대체직 채용 시 결격사유를 조회한 내역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현황

구분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일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방역활동지원	○○○	2020.12.01.~2020.12.31	2020.07.27	2020.07.27
방역활동지원	○○○	2021.01.04.~2021.01.29	2020.10.30	2010.10.30
방역활동지원	○○○	2021.01.04.~2021.01.29	2020.07.27	2020.07.27
시설당직원	○○○	2021.05.26.~2021.08.15	2021.03.29	2021.03.29
조리실무사	○○○	2021.09.23.~2021.09.24	2021.09.06	2021.09.06
시설미화원	○○○	2022.04.04.~2023.02.28	2022.02.25	2022.02.25

【조치할 사항】

- ① 한수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